

제25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 월 10 일

여수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경 천 구



여수시 조례 제2294호

붙임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여수시민이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수시민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적용) 조례 시행 이후 사용 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사용료 감면)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2. (생략)</p> <p><u><신 설></u></p> <p>3. (생략)</p>	<p>제24조(사용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여수 시민이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